

발송번호: 9-5-2019-089776643
발송일자: 2019. 12. 11.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7, 2층(역삼동, 중평빌딩)(특허법인우인)
특허법인우인[양승식] 귀하(귀중)

06246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결정서

출원인	성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고객번호: 220050095099)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우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7, 2층(역삼동, 중평빌딩)(특허법인우인)
	지정된변리사	양승식 외 1명
발명자	성명	박상현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 204동 3701호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
발명자	성명	김재형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44, 612동 201호 (운서동, 풍림아이원아파트)
발명자	성명	박진욱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13, 301동 307호 (중계동, 우성3차아파트)
출원번호	호	10-2017-0155271
발명의명칭		데이터 입출력 포화 검출 장치 및 방법
청구항	항수	19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끝.

[참고문헌]

1. US20160188207 A1
2. US20170206015 A1
3. AEHYUNG KIM 등, 'Machine Learning based Performance Modeling of Flash SSDs', In: Proceedings of the 2017 ACM on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CIKM '17), Singapore, Singapore, 2017
4. KR1020160102690 A

2019.12.11.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심사관 김계준

김계준



<< 안내 >>

【 등록료 납부,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시,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및 등록공보 확인 등 】

1. 등록료 납부안내
 - 특허료 납부예정금액(1~3년차분) : 786,000 원(1~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393,000 원(50% 감면대상자인 경우), 235,800 원(70% 감면대상자인 경우)
 -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특허료 납부 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2018. 7. 1. 설정 등록부터 등록증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특허로의 「전자등록증 수신함」과 특허고객번호상의 e-mail을 통해 전자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 등록료를 납부시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내국민은 매년 2월, 8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jsp/kiponet/mp/patentprize/index.htm>)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고안)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준일(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 하반기의 경우 매년 8월 1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고안)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발명
5.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만, '12.3.15. 이후의 출원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한 함)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있으면 평균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람, 마감기한 알람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www.ipacademy.net)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이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 042-481-3561(담당심사관 김계준)로,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